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환경영향평가 등의 제외 대상 추가〉
-특별재난지역에서 시행되는 재해복구계획등에 따른 사업-
■ 정희용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809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환경영향평가 등의 제외 대상 추가	3
※ 참고자료	9
1. 재해복구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현황	9

I. 제안경위

2025년 6월 13일 정희용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여, 신속한 협의를 통한 복구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을 시행할 때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환경보전방안 등의 서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재해·재난 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호 및 제43조제2항제4호).

Ⅲ. 검토의견

1. 환경영향평가 등의 제외 대상 추가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시행되는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호 및 제43조제2항제4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 3. (생략)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u>사업</u> .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보건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	제23조(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 ----- ----- ----- <u>사업</u> <후단 삭제>

현행	개정안
<u>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u>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 3. (생략)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u>사업.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u>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 ----- ----- 사업 <후단 삭제>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사업(법 제23조 및 제43조)]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개발)사업
-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개발)사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

이 중 ‘특별재난지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우리 위원회의 2023년 12월 의결을 통해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 중인 조항으로,

재난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설되었음²⁾.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경우 일부 항목에서 ‘개발’사업으로 한정함

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이유

...또한,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 등 재난·재해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행정 절차로 인해 복구가 늦어지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이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

실제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24년 집중호우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완주군과 금산군의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사례]3)

○ (제외 근거)

'24. 7. 집중호우로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대통령공고제348호,제349호) 중앙재난대책본부가 복구계획을 심의 의결('24.8.23.)한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 협의 제외 신청 및 검토는 복구사업 실시시절계 중에 진행, 사업일정 영향 없음

○ (제외 대상) 완주군장성천, 괴목동천, 성북천, 금산군유등천, 만악소하천 5개 사업

○ (추진 경위)

재해복구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요청(행안부 → 환경부, '25.3.31.)

⇒ 검토결과 통보(환경부 → 행안부, '25.4.14)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다만, 특별재난지역의 특성상 재해복구가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복구사업의 신속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 지역에서 시행되는 재해복구계획 및 이에 따른 사업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제외하도록 하는 것으로, 특별재난지역 복구사업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외 대상 사업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도록 규정함.(이하 생략)

3) <참고자료1. 재해복구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현황>

신속한 진행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법 제23조제4호 및 제43조제2항제4호의 신설 당시 긴급 복구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추진, 공사로 인한 추가 환경 훼손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단서 조항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마련된 점과

제도의 시행을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논의를 통해 「재해복구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이 마련되어 시행 중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⁴⁾.

실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5년에 요청된 재해복구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요청에 대한 처리기간은 약 15일이었으며, 협의 제외 신청 및 검토는 복구사업 실시절계 중에 진행되었음.

참고로, 개정안에 대하여 개정의 목적이 재해·재난 피해복구의 신속 집행을 위함이나, 서류 생략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협의과정에서 현황 및 적정성 파악에 시간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어 원안을 유지하고 서류 간소화 방안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한국환경공단)과

법률 개정 없이도 신속한 협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최소한의 환경보전방안 마련을 통해 환경파괴 예방이 가능하다는 의견⁵⁾(한국환경연구원) 및 재해복구사업에 대해 자연생태 회복을 고려하여야 하므

4) 해당 지침은 처리기간을 15일 이내로 하고, 실시절계 중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설계용역 등과 분리발주 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통합발주가 가능하도록 함.

5) 「재해복구사업의 환경보전방안 마련 연구」를 통해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면제 절차 및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였고, 해당 연구를 통해 재해업무 담당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간소화된 절차 및 저감방안 제시를 위한 서류 작성이 사업 추진 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동의가 있었다는 의견을 제출함.

로 사업계획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복구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제출 서류에 환경현황 등 작성은 환경공간서비스 등 자료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조사와 시간 소요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이 제출되었음.

문 의 처
02)6788-5541

※ 참고자료

1. 재해복구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현황

☐ 평가대상 제외 신청

○ (제외 근거) 2024. 7. 9 ~ 7. 10 집중호우로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대통령공고제348호, 대통령공고제349호) 하고 중앙재난대책본부가 복구계획을 심의 의결(2024.8.23.)한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 협의 제외 신청 및 검토는 복구사업 실시시절계 中에 진행, 사업일정 영향 없음

○ (제외 대상) 완주군장성천, 괴목동천, 성북천, 금산군유등천, 만악소하천 5개 사업

○ (추진 경위) 재해복구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요청(행안부 → 환경부, '25.3.31.) ⇒ 검토결과 통보(환경부 → 행안부, '25.4.14)

☐ 평가대상 제외 (사례)

○ 사업내용 (완주군 장성천)

- 제방축조 : 4,465m(좌안 2,275m, 우안 2,190m), 보축 500m
- 교량 재가설 : 1개소 / 보 및 낙차공 정비 : 2개소
- 배수시설물 : 16개소

○ 사업시행자 : 지자체 / 승인기관 : 행정안전부

○ 공사기간 : 2025년 05월 ~ 2026년 12월

☐ 제외 검토 및 결과 통보

○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돌풍의 빈도와 강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본 사업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하며, 제출한 환경보전방안 성실히 이행함을 조건으로 통보함

※ 재해복구사업 실시절계 중 면제 신청(5개 사업) 및 처리기간 단축(약 15일 소요) 등으로 재해복구사업의 일정 영향 없음

※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